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91
----------	-------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김용만 · 문진석 · 이기현
김영배 · 양부남 · 김남희
한준호 · 박균택 · 강준현
황명선 · 이정문 · 오기형
김 윤 · 박해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감사에 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

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u> <u>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 학계 · 언론계 · 경제계 · 여성계 · 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u> <u>④ 제3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u> <u>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u>

	<u>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u> <u>⑥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u>⑦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u> <u>⑧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u>⑨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u>⑩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u>第15條의2</u> (選舉研修院) (생략)	<u>第15條의3</u> (選舉研修院)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u>第15條의3</u> (公務員의 採用등) (생략)	<u>第15條의4</u> (公務員의 採用등) (현행 제15조의3과 같음)

략) <u>제15조의4</u>(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생략) <u>제15조의5</u>(국회 보고) (생략)	행 제15조의3과 같음) <u>제15조의5</u>(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현행 제15조의4와 같음) <u>제15조의6</u>(국회 보고) (현행 제15조의5와 같음)
---	--